

##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

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(☎ 044-201-3512)

-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·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 피신청인이 분쟁조정 참여토록 의무화됩니다.
- 또한, 조정 효력은 “당사자간 합의”에서 “재판상 화해”로 강화되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확보 되었고,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 위원회로 일원화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국토교통뉴스)보도자료)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

### <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>

- ▶ 추진배경 : 건설관련 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 해소
- ▶ 주요내용
  - ①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 참여 의무화
  - ② 조정 결과는 “재판상 화해”의 효력으로 격상하고,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
- ▶ 시행일 : 2014.2.7.